

5/ 정치 이데올로기적 현상으로서의 자연장(自然葬)

‘시스템’을 넘어*

김셋별



산에서의 자연장의 모습

김셋별 현재 인간문화연구기구/총합지구환경연구소 특임 조교수로 재직 중.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전공 및 문화인류학과를 졸업하고 고난대학(甲南大学) 응용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일본총합연구대학원대학(기판 기관: 국립민족학박물관)에서 문화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및 한국의 현대 장례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일본의 1990년 이후의 장례문화의 변화에 관한 논문을 『종교와 사회』(宗教と社会), 『비교일본문화연구』(比較日本文化研究) 등의 학술지에 게재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2-B00006).

<https://doi.org/10.291514/ILBI.2018.18.162>

1. 정치 이데올로기적 현상으로서의 자연장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후기부터 메이지 시대 무렵에, 유골의 처리 및 죽음 의례, 선조제사가 ‘이에’(家)제도¹와 불교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장례 문화가 성립되었다. 각 마을의 사찰은 그 마을의 가구들과 ‘단카’관계(檀家關係)²를 맺어, 장례식 및 화장 후 납골, 공양 및 제사를 주관했다. 또한 ‘단카’관계 및 무덤은 ‘이에’제도에 근거해 다른 유산과 함께 장자에게 상속되고, 장자 외의 자녀들은 분가해서 새로운 ‘이에’를 형성해 따로 무덤을 만드는 형태가 확립되었다. 즉, 무덤의 석실 안에는 부부의 골분함이 안치되고, 다음에는 후계자 부부의 골분함이 안치되는 식으로 무덤이 계승되어왔으며 여기에는 ‘이에’의 영속성이 전제되었다. 이 석실 위에는 보통 ‘XX가 선조 대대로의 묘’(XX家先祖代々之墓)라는 문구가 새겨진 비석을 세운다. 이러한 형태는 도시 지역의 공원식 묘지에서도 존속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례문화에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혈연, 지연, ‘단카’관계에 상관 없이 같은 묘석이나 초목 아래 유골을 매장하는 합장묘, 개인이나 핵가족 단위로 초목 아래 유골을 매장하는 수목장, 바다나 산 등에 산골(散骨)하는 장법 등이 나타난 것이다.

일본 장례문화의 변화에서 중요한 요소인 선조관의 양상에 대해, 선행 연구는 전후 가족제도의 변화에 발맞추는 형태로 선조관도 변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이노우에 하루요는 전후의 사회 변화 및 고도경제성장을 거치며 부부제 가족 이념이 정착한 현상과, 1990년대 이후 진행된 개인화를 통틀어 탈‘이에’ 현상이라고 파악한다.³ 전후 일본에서는 부부가 사망하면 소멸하는 가족제도, 즉 한 세대에 한정되며 영속성을 전제로 하지

1 가산, 가명, 가업을 대대로 계승하는 사회경제적 단위로서의 ‘이에’는 농민 계층에서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후반에 이미 확립되었다(坂田聡, 『日本中世の氏・家・村』, 校倉書房, 1997). 그러나 이 글에서는 메이지 민법상 규정된 선조제사와 가부장제의 영속성을 전제로 한 제도로서의 ‘이에’를 주 논의 대상으로 한다.

2 특정 불교사찰과 사람들 간의 장례 및 공양을 매개로 하는 지속적인 관계

3 井上治代, 『墓と家族の変容』, 岩波書店, 2003, 27쪽.

않는 부부제 가족제도가 시행되었고, 부부제 가족제도의 이념은 산업화와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며 정착되었다.

이노우에는 이에 따라 선조제사 역시 탈‘이에’적 선조제사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근대적 선조제사가 ‘이에’의 영속적이고 집합적인 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왔던 것에 반해, 탈‘이에’ 현상이 진행되면서 개인으로서의 고인을 추모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덤 역시 ‘이에’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선조 대대로의 묘에서 계승자가 필요하지 않은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고 파악한다.⁴ 즉, 이노우에는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장례문화의 변화를 산업화와 가족제도의 변화라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일본 근대의 선조관 및 선조 대대로의 묘의 성립에 있어서 메이지 정부의 개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선조관의 변화 역시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송현동 역시 장례문화의 변화를 파악함에 있어서, 죽음은 사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장례를 치르는 주체는 남아 있는 자들, 즉 유족, 공동체, 나아가서는 국가라는 점에서 공적인 영역에 속하며, 이 중 가장 큰 힘을 가진 국가가 그 통치 이념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장례를 통제하고 개입하는가와 그에 대한 행위자들의 실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⁵ 이같은 고찰을 현대 일본의 장례문화에 참조하자면 메이지 정부의 통치 이념을 반영하며 형성된 선조관과 그에 대한 행위자들의 작용/반작용의 실천의 축적이, 1990년 이후의 장례문화 변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일본 근대 선조관 및 선조 대대로의 묘의 성립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일본 민속학의 효시이며 선조관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야나기타 구니오는 ‘이에’를 일본사회의 기본 단위로 보고,

4 井上治代, 『墓と家族の変容』, 268~270쪽.

5 송현동, 「리뷰논문: 한국 장례 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문화인류학』 37(2), 2004, 93~95쪽.

‘이에’의 영속성은 사후에 선조가 되고자 하는 일본인 고유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본’(盆)제사, 양묘제(兩墓制), 신사 제사 등의 기원을 ‘이에’의 선조 신앙에 근거한 것이라 파악했다.⁶

후쿠다 아지오는 이러한 ‘이에’ 및 선조관이 메이지 정부의 가족국가관과 메이지 민법이 규정한 ‘이에’제도와 일치하며, 이는 패전의 위기 상황에서 ‘일본인론’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당시 민속학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한다.⁷ 모리 겐지 역시 메이지 민법의 기초자(起草者)인 호즈미 노부시게(穂積陳重)의 선조관, 즉 황실의 시조에 대한 전 국민적 제사와 우지가미(氏神)에 대한 지방인민의 제사, ‘이에’의 선조에 대한 제사를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선조관과 야나기타의 그것이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⁸ 그러나 야나기타가 제시한 이러한 선조관은 당시의 국가통합 이념인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가족국가관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실제 민속과 동떨어진 부분도 적지 않았다. 야나기타는 자신의 선조관의 근거로 ‘본’제사에서의 선조의 집합적 성격과 양묘제, 선조 대대로의 묘의 전통을 꼽았지만, 이는 근래의 실증적 연구들에 의해 다각도로 비판되고 있다.⁹ 특히 ‘선조 대대로의 묘’는 메이지 시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근세까지만 해도 개인묘 혹은 부부 합장묘가 일반적인 형태였다는 것이 묘석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¹⁰

모리는 선조 대대로의 묘가, 천황 및 황족의 능묘가 선조제사의 대상으로 위치지어지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보았다. 천황릉은 가족국가관을 가시화하고 재생산하는 장치로, 선조제사의 중심이 되었다. 에도 시대 말기에서 메이지 시대에 걸쳐 국학사상 아래 진무천황릉을 비롯한 천황릉이 지

6 柳田国男, 『先祖の話』, 角川学芸出版, 1946(2013).

7 福田アジオ, 『柳田国男の民俗学』, 吉川弘文館, 1992.

8 森謙二, 「柳田国男と穂積陳重: イデオロギ―としての祖先祭祀」, 『黒木三郎先生古希記念論文集 現代法社会学の諸問題』, 民事法研究会, 1992.

9 岩田重則, 『墓の民俗学』, 吉川弘文館, 2003; 前田俊一郎, 『墓制の民俗学: 死者儀礼の近代』, 岩田書院, 2010 등 참조.

10 市川秀之, 「先祖代々の墓の成立」, 『日本民俗学』, 2002 등 참조.

정/수복되고 황실 제사가 정비되었다. 천황릉도 무덤이므로 부정하다는 종래의 신도적 인식이 부정된 것이다. 이러한 묘지관은 각종 법령을 통해 천황의 자식이라 여겨지던 국민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때까지 유체/유골의 매장 장소와 묘석 건립 장소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매장 장소는 잊혀지거나 소홀히 취급되었던 지역이 많았으나, 메이지 정부는 유골을 묻고 묘석을 세운 형태를 분묘라 정의하고, 영구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메이지 민법의 묘지행정에 반영되었으며, 현행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묘매법’)의 “매장 혹은 소골(燒骨)의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에 계승되었다.¹¹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근대 장례문화의 형성은 메이지 정부의 가족국가관 확립이라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의 변화 역시 이러한 일본 근대 장례문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 글은 자연장을 중심으로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현대의 장례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2절에서는 자연장을 처음 제창한 ‘장송의 자유를 추진하는 모임’(葬送の自由をすすめる会, 이하 ‘모임’)의 이념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검토한다. 3절에서는 그러한 이념이 자연장의 의례 형태를 구성해왔음을 밝히고자 한다.

2. ‘장송의 자유를 추진하는 모임’의 이념

‘모임’은 1991년 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서 처음으로 산골을 실시하고, 이를 자연장이라 명명했다. 2000년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산골의 상업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120여 개의 업체가 산골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소규모 크루즈 업자이며, 산골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는 3개 업체 정도다. 이 글에서는 여전히 규모가 가장 큰 ‘모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

11 森謙二, 『墓と葬送の社会史』, 吉川弘文館, 2014, 216~239쪽.

고자 한다. 그리고 명칭은 ‘모임’이 사용하는 자연장으로 통일한다.

‘모임’의 첫 자연장 이전까지, 유골 혹은 분말화한 유골을 뿌리는 행위는 ‘묘매법’의 “매장 혹은 소골(燒骨)의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과, 형법 제190조의 유골 유기죄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모임’의 첫 산골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생노동성은 ‘묘매법’에 대해 “토장과 화장이 반반이었던 패전 직후의 혼란기인 1948년에 생긴 법률로, 마구잡이식 토장으로 전염병이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본래 토장을 문제 삼은 것이지 유희(遺灰)를 바다나 산에 뿌리는 장법은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상 밖이다”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또한 유골 유기죄에 관해 법무성은 “이 규정은 사회적 습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장송을 위한 제사로 절도를 가지고 행하는 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불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첫 자연장 실시 이후 ‘모임’은 자연장의 보급과 실시에 앞장서 왔다. ‘모임’의 회원 수는 2013년 현재 16만 9,864명이며, 자연장 실시 횟수는 1,823회에 달한다. 먼저, 지금까지의 주요 활동에서 보이는 ‘모임’의 이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묘매법 개정 반대 운동과 사후의 자기결정권

‘모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상으로 사후의 자기결정권을 꼽을 수 있다. 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자신의 사후의 행방을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본래 유족이 주체가 되는 장례에까지 고인의 의지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개인주의의 확장으로 비춰지기 쉽다. 그러나 사후의 자기결정권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 발화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근대 장례문화와의 알력 속에서 자연장이 어떻게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묘매법 개정 반대 운동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묘매법 개정 움직임은 1998년 후생노동성위생국 소관의 ‘앞으로의 묘지 등의 양상을 생각하는 간담회’(これからの墓地等の在り方を考える懇談会)로부

터 시작되었다. 제정된 지 50년이 경과한 묘매법이 현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발족된 이 간담회는 1997년부터 총 12차례의 회의를 거쳐 1998년 6월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묘지의 경영 주체, 묘지 이용자의 권한 보호와 다양한 수요의 대응, 묘지의 경영과 관리의 합리화와 함께, 산골에 대한 방침이 제시되었다. 산골 부분에서는 ‘모임’의 존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장송의 자유, 사후의 자기결정권 개념도 언급되었다.

그중 ‘산골에 대한 방침’은 “죽은 자의 유지(遺志)를 존중해서 산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용납할 수는 없다. 현행 법대로라고 해도, 공중위생상 혹은 국민의 종교적 감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산골이 행해질 경우, 묘지매장 행정상 당연히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길거리나 수원지(水源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장소”를 뜻한다. 그리하여 보고서에서는 산골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묘매법이 정하는 묘지 구역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규제 방법으로는 “장송 방법은 지역차가 상당하다는 것, 그리고 묘지매장에 관한 규제권한이 지방자치법상, 단체위원 사무로 되어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고 있다.¹²

이 보고서 자체는 강제력이 없지만 여기에서 제시된 사항은 이후의 지방자치체의 묘지 정책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홋카이도 나가누마초(長沼町)에서는 “누구도 묘지 이외의 구역에 소골(燒骨)을 뿌려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나가누마초 상쾌한 환경 만들기 조례’(長沼町さわやか環境づくり条例)가 제정되었다.¹³ 이 외에도 홋카이도의 굿찬초(倶知安町) 역시 ‘모임’의 자연장지에 대해 자숙을 요청했고, 홋카이도 나나에초(七飯町) 및 이와미자와초(岩見沢町), 나가노현 스와시(諏訪市), 사이타마현 지치부시(秩父

12 藤井正雄, 『死と骨の習俗』, 双葉社, 2000.

13 『仏事』, 2005년 6月号, 61쪽.

市) 등지에서 비슷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에 대해 ‘모임’은 “장송의 자유에 국가 권력의 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¹⁴며 강하게 반발했다. 즉, 국가를 향해 사후의 자기결정권이 발화된 것이다. ‘모임’ 측은 회보 27~31호에 걸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간담회의 규제 방침을 비판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장송의 자유를 지키자, 자연장의 법규제에 반대” 등의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후생노동성에 공식적으로 항의문을 제출했다.

‘모임’의 논지는 이러하다. “습속, 습관은 개인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며 규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¹⁵이며, “국가와 지자체는 장례라는 마음의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¹⁶라는 것이다. ‘모임’의 회장과 이사들은 제6차 회의에 출석해, 묘매법 제1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국민의 종교적 감정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지배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흥미로운 점은, 사후의 자기결정권이 국가에 대한 발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국가권력이 ‘단카’제도, ‘이에’제도를 통해 선조 대대로의 무덤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다. ‘모임’은 ‘단카’제도에 대해 “서민도 무덤을 가지게 된 건 일반적으로는 에도 시대 중기로, 막부가 기독교를 금제(禁制)하기 위해 민중을 불교 사원에 귀속시켜, 기독교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한 것을 그 시작으로 보았다. 또한 ‘이에’제도에 대해서는 “그것을 메이지 정부는 ‘이에’의 무덤으로 일반화시킴으로써 민중의 죽음까지 국가 관리의 밑에” 놓이게 했다고 논한다.¹⁷ ‘모임’은 이러한 민중통제제도에 의해서 탄생한 선조 대대로의 무덤을 거부하고, 에도 시대 이전의 장례로 회귀하는 것이 자연장이라고 주장한다.

14 『再生』(葬送の自由をすすめる会会報) 第28号, 3쪽.

15 『再生』 第31号, 1998. 12, 4쪽.

16 『再生』 第29号, 1998. 3, 6쪽.

17 『葬送の自由』 0号, 1991. 3, 2쪽.

2) 장송기본법 제정 운동과 ‘시민’으로서의 죽음

그렇다면, 국가, ‘이에’, ‘단가’로부터 탈피하려는 이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일까.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모임’이 구상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묘매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매장만을 인정하는 기존의 묘매법의 틀 자체가 그들에게는 사후의 자기결정권 침해이며, 이 틀 안에서 산골을 인정한다고 해도 묘지 안에서의 산골만이 허가될 것이라는 교훈을 간담회에서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임’은 2007년부터 장송기본법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기본법이란 헌법과 개별법 사이를 연결하여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법은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보다는 국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분야에 대해 제도, 정책의 기본방침, 원칙, 준칙을 명시하는 법이다. 묘매법 안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모임’은 먼저 사후의 자기결정권을 헌법 안에서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2009년 ‘모임’은 장송기본법 제정 어필을 채택했다. 원문¹⁸은 다음과 같다.

1. 죽은 이를 장사지내는 행위는 장송의 자유를 대원칙으로 하며, 개인의 존엄을 관철하고 자주적이고 개성적으로 행한다.
2. 산림, 하천, 바다 등에 유회(遺灰)를 뿌리는 자연장은 절도, 품위에 충분히 유의한다.
3. 묘지의 대규모 조성 등이 자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에 반해, 자연장은 토지의 유효한 활용과 보전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서는 자연환경 악화를 방지할 수도 있다. 국가, 지방자치체는 자연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 국가, 지방자치체는 자연장이 상기와 같은 절도를 가지고 행해질 경우, 자연장을 위해 공유지를 개방하고 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공적 예산의 투입을

18 『再生』第73号, 2009. 6, 3쪽.

적극적으로 행한다.

5. 국가, 지방자치체는 자연장을 부당하게 규제하지 않는다.
6. 기존의 습속에 따른 매장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한다.
7.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검토, 토론을 마다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국경, 민족, 인종, 종교, 성의 차이를 넘어서는 개인이며 일체의 차별은 인정되지 않는다.
8. 장송의 자유 및 자연장은 이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된다.

이 중 7항은 장송기본법에 담기에는 다소 생소한 면이 있지만 ‘모임’의 이념을 파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묘매법 개정 운동에 대한 ‘모임’의 반론에서, ‘모임’이 국가, ‘이에’, ‘단가’를 같은 선상에서 파악하고, 그에 의해 규정되는 선조 대대로의 무덤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장례문화를 규정하는 국가, ‘이에’, ‘단가’를 거부하는 이들은 주체적인 개인, 나아가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임’의 이념은 1980년대 이후 일본사회에 나타났던 ‘새로운 사회운동’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새로운 사회운동’이란 서구에서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나타난 일련의 사회운동을 지칭한다. 다카하시의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논의를 참조하여, 물질적 재생산 분야의 분배 문제를 둘러싼 제도화된 분쟁이 아닌,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사회화의 영역에서의 ‘생활 형태의 문법’을 둘러싼 분쟁을 ‘새로운 사회운동’의 특징으로 꼽았다. 즉, ‘새로운 사회운동’이란 국가행정과 시장으로 구성되고, 법제화되고 형식적으로 조직된 ‘시스템’이 일상적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세계’에 개입하여 동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대항이라 할 수 있다.¹⁹ 이에 해당하는 운동으로는 1960년대 이후 서구사회의 학생운동, 반핵

19 高橋徹, 「後期資本主義社会における新しい社会運動」, 『思想: 特集 新しい社会運動: その理論的射程』 737号, 1985, 5쪽.

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지역주의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도 1980년대 이후 ‘생활클럽 생협’운동이 약진하는 등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간주되는 운동들이 전개되었다.²⁰ ‘모임’의 설립 멤버들은 ‘모임’ 이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에 관여해온 이들이 대부분이다.

‘모임’의 이념은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추구하는 죽음관이 응집된 것으로 국가, ‘이에’, ‘단가’ 등의 ‘시스템’의 간섭에서 탈피해, ‘새로운 사회운동’이 추구하는 ‘시민’, 즉 삶의 방식을 자각적으로 추구하고 선택하는 개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전후의 사회변화와 ‘시스템’의 거부

그렇다면 ‘시스템’의 간섭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경향은 어떠한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되며, 실제 회원들은 그것을 어떻게 내재화해온 것일까.

이는 패전 후 일본의 가치체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미군 점령기에는 도시와 지식인뿐 아니라 농촌과 서민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아메리카니제이션(Americanization)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적 민주주의가 이상으로 설정되었고 천황제 수정, 군국주의적 교육 금지, 국가권력과 신도의 분리 등 전쟁 전과 전쟁 중의 이념과의 단절을 피하는 지침이 시행되었다. 전전, 특히 전쟁 중에는 충군애국이라는 상징에 의해 통합된 국가 목표의 달성이 사적 영역을 현저히 제한했지만, 전후 이러한 민주주의 정책하에서는 사적 영역이 우선시되었다. 전후 민주주의 정책은 여러 분야에 미쳤는데 그중 하나가 가족의 민주화에 대한 논의였다. 일본인이 독립적인 행위주체로서의 자각이 약하고 권위에 순종적이며 다수 의견에 동조하기 쉬운 성향은 ‘이에’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전후 5~6년간은 가족의 민주화야말로 일본사회의 민주화의 첫걸음이며 개인의 주체성,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논점이 지배적이었다.²¹ 이에 따라 메이지 민법의 ‘이에’제도는

20 山口定, 『市民社会論: 歴史的遺産と新展開』, 有斐閣, 2004, 94~98쪽.

21 作田啓一, 「戦後日本におけるアメリカニゼーション」, 『価値の社会学』, 岩波書店, 418~421쪽.

폐지되었다.

‘모임’이 선조 대대로의 묘를 지양하는 것은 이러한 전후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회원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애사 조사에 관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전후 민주주의적 이상을 고도의 교육과 개인적인 경험, 즉 전쟁 체험의 영향 및 학생운동의 경험, 가부장제적 여성상을 강요당한 경험 등을 통해 내재화한 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후 민주주의를 내재화하고 국가 등 시스템보다 사적 영역을 중시하게 된 이들이 장례 선택의 장에서 ‘모임’의 이념을 만남으로써, ‘시스템’적 성격을 지니는 선조 대대로의 묘를 거부하고 자연장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²²

예를 들어 1932년 미야기현(宮城県) 센다이시(仙台市)에서 태어난 T씨는 자신의 가계가 대대로 ‘군신’이었던 유서 깊은 가문이라고 한다. T씨의 양친은 패전을 맞아 T씨와 동생들을 데리고 집단자결을 하려 했다. 미수에 그쳤지만 어린 마음에도 죽고 싶지 않았던 T씨는 이러한 가풍에 반감을 가졌다.

그 후 T씨는 전후 민주주의가 풍미하는 와중에 교육을 받게 된다. T씨는 축산학과에 진학해 축산 관련 직업에 종사했다. 이는 “우리 집은 일본의 쌀, 천황 폐하가 주시는 쌀을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 너는 소 젖이나 짜는 일을 하는 것이냐. 일본 식(食)의 전통의 근본을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부모와 친척의 비난을 감수하며 선택한 것이었다. 이러한 비난은 쌀을 천황과 관련시켜 신성시하고 고기를 피차별민과 관련시켜 터부시해온 역사와 관련이 있다.²³ 그는 이러한 인식 틀을 거부하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장려함으로써 일본인의 왜소한 체격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는 T씨에게 있어 ‘이에’의 전통 및 국가주의적 이념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선택을 하고자 한 시도였다. 그에게 자연장은 이러한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2 생애사 사례와 분석에 대해서는 줄고 金セツピョル, 「自然葬の誕生: 近代日本の価値の拒否」, 『総研大文化科学研究』 8 참조.

23 原田信夫, 『歴史のなかの米と肉: 食物と天皇・差別』, 平凡社, 1993.

일본의 가족제도는 너무 제약이 많아서 나라는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 가족제도는 옛날에 일본의 국민을 총알 삼아 세계로 보낸 시대가 있고요.

인간으로서 조직의 틀에 갇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전쟁을 체험한 세대들한테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통제처럼 무덤이라는 하나의 틀에 갇히고 싶지 않다, 제발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런 기분. 죽어서까지 그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학생운동의 경험을 자연장 선택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 전후 베이비 붐 세대에서도 발견된다. 오구마가 지적하듯이 전후 베이비 붐 세대는 전후 민주주의 교육을 가장 투철하게 받은 세대이기 때문이다.²⁴

3. 자연장의 의례 형태

이 절에서는 ‘모임’이 어떻게 자연장의 의례 형태를 구성해왔는지를 살펴 보겠다. 일단 모임에서 행해지는 자연장의 흐름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모임’의 자연장의 계약 종류로는 본인계약, 유족계약, 유족 복수계약이 있다. 본인계약은 회원이 사후에 자신의 자연장을 희망할 경우, 생전에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희망하는 자연장의 장소와 연락책임자를 지정하고, 예납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여기서 계약자 본인은 회원일 필요가 있지만 연락책임자는 회원이 아니어도 된다. 계약자 본인의 사후에는 연락책임자가 ‘모임’에 연락하여 실제 자연장을 실시하게 된다.

유족계약은 가족, 혹은 지인의 자연장을 실시하기 위해 맺는 계약이다. 이때 계약자는 회원이어야 하지만 고인은 회원이 아니어도 된다. 회원은 몇 번이고 유족계약을 맺어 복수의 고인을 자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번에

24 小熊英二, 『1968: 叛乱の終焉とその遺産』, 新曜社, 2009, 784~786쪽.



〈그림 1〉 유골 분말화 과정



〈그림 2〉 수용성 종이에 쓴 유골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위)



〈그림 3〉 음료를 뿌리는 모습(아래)

여러 명의 고인을 자연장으로 할 때는 유족 복수계약을 맺는다.

또한 사후에서 산골까지는 임종의 확인, 장례식/고별식, 화장, 화장한 유골의 분말화 과정을 거친다. 이 중 ‘모임’이 개입하는 것은 분말화부터다.

바다에서의 산골은 출항 후 10~30분 정도 바다로 이동한 후 진행된다. 입회인(‘모임’의 자원봉사자)이 ‘모임’의 역사와 취지, 그리고 현 시점까지의 자연장 횟수를 알린다.

산골 지점에 도착하면 유족들은 분말화한 유골과 꽃, 음료를 뿌린다. 그 동안 입회인은 자연장 실시 증명서에 정확한 산골 시간을 기입하고, 선장은 해상지도에 장소를 표시한다. 산골이 끝나면 선장이 기적을 세 번 울리고, 묵도 시간을 가진다. 그 후 유골과 꽃, 음료를 뿌린 장소를 중심으로 세 차례 돈 후, 항구로 돌아간다.

항구에 도착하면 입회인이 자연장 실시 증명서를 낭독한 후, 해상지도와 함께 유족 대표에게 건네준다. 산골 실시 후에는 각자의 방식으로 추도를 한다. 다음에서는 자연장이 어떻게 구성되어왔는가를 유체 처리, 고별과

추도, 사회관계의 세 축으로 구분해 기술하겠다.

1) 유체 처리

(1) 유골의 분말화

자연장에서의 유체 처리는 크게 유골의 분말화와 산골로 구분할 수 있다. 분말화 작업은 유족, 지인 등이 추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자연장 계약 시 배부되는 팸플릿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²⁵이 적혀 있다.

본회는 유족 분이 손수 분말화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도저히 못 하겠을 경우
업자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처음엔 반감이 있던 분들도 하시고 나면, 고인과
진지하게 마주하는 기회가 되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업자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 이유는 고인과 인연이 없는 이가 기계를 이용해서 분쇄하기 때문이다. 분말화에 사용하는 도구 역시 “고인과 인연이 있는 문진, 골프채, 야구 방망이, 피켓, 망치”²⁶ 등이 권장된다. 2011년부터는 무료로 다른 회원들의 분말화를 대신해주는 회원도 등장했다. 그는 “같은 회원”인 자신이 “손수” 분말화 작업을 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²⁷ ‘모임’에서 소개하는 업자 역시 회원들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 ‘모임’ 설립 당시 이사였던 업자는 ‘모임’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업자들보다는 인연이 있다고 생각한다.

(2) 산골

여기서는 산골하는 유골의 양, 산골 장소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유골의 전부를 산골할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면 1997년에 열린 ‘무덤 대토론회’에

25 팸플릿 “自然葬のご案内” 2013년 2월 배부.

26 팸플릿 “自然葬のご案内” 2013년 2월 배부.

27 『再生』 第82号, 2011. 12, 8쪽.

서는 회의 고문인 종교학자 아마오리 데쓰오(山折哲雄)와 회장 야스다 무쓰히코(安田睦彦) 간에 다음과 같은 대화²⁸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아마오리: ... 그런 전통적인 무덤을 중심으로 하는 장제를 비판하면서 이 모임이 생겼고, 자연장을 추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자연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 보다이지(菩提寺)에 무덤을 만들고 일부만 바다에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무덤에 연연하는지...

야스다: 대부분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어중간하게 무덤을 쓰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네요. ...

또한, 사무직원의 전화 대응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엿볼 수 있었다. 사무소에는 무덤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고민에서 자연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 그들은 계승자 필요하지 않은 합장묘 및 수목장과 자연장을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사무직원들은 “자연장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함으로써, 합장묘 및 수목장과 구분을 명확히 한다. 만일 이런 방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모임’에 가입할 수 없다.

한편, 산골 실시 장소는 특정 가능한 공간이 아닌 “대자연” 같은 넓고 추상적인 공간을 선정할 것을 장려한다. ‘모임’은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산골 및 수목장을 무덤으로 간주하여, 자연장과는 구분해왔다. 이러한 태도를 알 수 있는 사례가 도쿄도 고다이라영원(小平霊園)의 ‘수림묘지’에 관한 평가다.

2012년 5월, 도쿄도가 운영하는 고다이라영원에 수림묘지가 들어섰다. 이것은 수목장이 공영 묘지에 도입된 첫 사례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사실 여기에는 ‘모임’의 회원 2명이 관여되어 있었다. 그들은 본래 고다이라영원과 상관없이 도쿄도에 ‘도(都)가 공식적으로 산골하는 도민을 지원하는

28 著者なし, 「お墓大討論会」, 『季刊 仏教』 38, 法蔵館書店, 1997, 81~82쪽.

시책에 대해'라는 청원을 제출했었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쿄에 뿌리를 내린 이들의 사후를 도쿄도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청원은 고다이랴영원의 수립묘지를 추진하던 도청 관계자에게 구색을 맞추기 위한 구실로 이용된다. 도청 관계자와 의견을 절충해나가는 과정에서, 청원의 취지는 “도는 도립영원에서 합장묘 등의 형태를 도입해왔지만, 항아리에 넣어서 매장하는 방법은 금새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유골을 분말화해서 뿌리게 하면 어떨까. 유골을 분말화해서 장송하는 것에 반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 이미 일본에서는 형성되어 있다”로 변경되었다. 또한 “도립영원 안에 산골 정원을 만든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여기서 “산골정원”이란 “분말상의 유골을 매장할 수 있는 묘지”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청원은 2010년 10월의 도의회에서 채택되었다.

두 회원의 보고를 받은 ‘모임’의 일부 이사는, 타협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도쿄도에 의견이 수용된 사례로서, 회보에 보고하고자 했다. 그러나 회장 및 대부분의 이사들은 “수립묘지는 무덤 그 자체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자연장과는 다르다”며 제안을 각하했다. 결국 회보에는 두 회원의 개인적인 활동으로서 짧막하게 소개되는 데에 그쳤다.

‘모임’의 이러한 인식은 유골을 뿌리는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화 대응 사례가 있었다. 돌아가신 모친의 유골을 생전에 모친이 좋아하는 영화의 무대가 된 산에 뿌리고 싶다는 회원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장소는 해당 지자체가 산골규제조례를 시행함에 따라 수년 전부터 산골이 불가능하게 된 곳이었다. 사무직원은 “자연은 어디든 똑같다”라며 추상적인 공간 감각을 가지고 자연장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바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나가와현에는 자연장을 할 수 있는 항구가 여러 곳 있다. 수년 전에 한 항구에서 출발해서 부친의 유골을 뿌린 한 유족이, 이번에는 같은 장소에서 모친의 산골을 계약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항구에서 전철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항구에서 출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사무직원은 “바다는 어디든 연결되어 있다”라며 장소

에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뿌리는 방식 역시 특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나무 밑에 유골을 뿌릴 경우, 그 나무를 중심으로 뿌린 장소가 특정되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사후의 고인을 상상하게 된다. ‘모임’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자연장지 안의 되도록 넓은 범위 안에서, 조금씩 여기 저기 뿌릴 것을 권한다. 필자가 참여했던 어느 자연장에서는 한 그루의 나무 주위에 둥글게 모든 유골을 뿌렸다. 그 사진을 본 회장 및 이사들은 “이건 무덤이지”라며, “보통 우리 회원들은 이렇게 좁은 곳에 뿌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 고별과 추도

‘모임’에서는 불교 등 특정 종교에 의한 의례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자연장의 안내」의 ‘주의사항’에는 “위패의 반입을 금지합니다”라는 항목이 눈에 띈다.²⁹ 일본의 불교식 장례와 제사에서 중심이 되는 위패가 자연장의 현장에선 거부되는 것이다. 다만 자연장은 “의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교와 사상에 근거하여 자유로우면서도 절도 있는 장례”를 추구한다고 한다.³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각자의 신앙 및 고인을 추도하는 마음에 따라 배를 장식하거나, 배 위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형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고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타나면 됩니다.³¹

또한 앞의 ‘주의사항’에 따르면 “상복은 삼가주십시오”라는 항목이 있다. 이는 “바다나 산에 검은 옷을 입은 군단이 나타나 주위의 눈총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론 “고인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날은

29 팸플릿 「自然葬のご案内」 2013년 2월 배부.

30 葬送の自由をすすめる会, 『自然葬ハンドブック: 一家に一冊』, 凱風社, 2005, 17쪽.

31 『葬送の自由』 0号, 1991. 3, 6쪽.

슬픈 날이 아니라 축복할 날³²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새로운 추도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산골 후의 추도 방식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산골한 장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는 것이다. ‘모임’은 “무덤이나 유골에 고인의 영혼이 깃든다는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방침에 근거해, 새로운 유골과 영혼의 관계, 나아가서는 추도의 방식을 추구한다. “일부러 무덤에 가지 않아도 바다나 산을 볼 때마다, 혹은 꽃이 필 때마다 고인을 떠올리는 것도 추모의 한 형태”이며,³³ “바다는 세계 전역에 걸쳐서 펼쳐져 있으므로 어느 바다를 보아도 고인을 떠올릴 수 있다”³⁴ 등의 추도 방식을 제시한다. 그에는 “크나큰 자연의 생명의 순환 안으로 돌아가는 기쁨, 기도와 같은 감정”³⁵이 근원에 있다고 한다.

산골한 장소를 방문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유골이 뿌린 장소에 일정 기간 남아 있으며 바다에 비해 재방문하기가 용이한 육지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자연장 신청서에는 “재생의 숲(육지에서의 자연장지)”은 무덤이 아닙니다. 재방문은 삼가주십시오”라는 문구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는 재생의 숲이 회원의 개인 소유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산골한 장소를 무덤과 구별하고, 고인의 영혼이 깃든 장소로 인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 문구는 2012년 총회 이후에 추가된 것이다. 그 계기는 재생의 숲을 회에 기부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한 회원의 문제 제기였다. 그는 노후의 취미활동으로 식물을 재배하고 돌보기 위해 땅을 구입했고, 재생의 숲으로 기부하여 자연장지가 되고 난 뒤에도 원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재생의 숲을 방문하던 그는, 산골 장소를 다시 방문한 유족과 마주치거나 꽃이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하곤 했다. 그는 사람이 오는 것 자체는 개의치 않지만, 마치 성묘처럼 재방문하는 것은 자연장

32 葬送の自由をすすめる会, 『自然葬ハンドブック: 一家に一冊』, 17쪽.

33 『再生』 第24号, 1997. 3, 15쪽.

34 著者なし, 「お墓大討論会」, 『季刊 仏教』 38, 法蔵館書店, 1997, 82쪽.

35 『再生』 第70号, 2008. 9, 3쪽.

의 사상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3) 사회관계

‘모임’에서는 당사자, 혹은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친족/지인이, ‘이에’제도와 ‘단가’제도에 좌우되지 않고 자연장을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본인계약은 모임의 주요한 이념인 사후의 자기결정권을 구현하는 제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필자가 참여관찰을 막 시작하던 무렵, 한 사무직원은 가입 카드에 쓰여 있는 가입 동기와 자연장 계약 상황 등을 보여주며, ‘모임’의 이념과 합치하는 동기를 기입하고 본인계약까지 한 회원들을 가리켜 “고급” 회원이라 칭했다. 또한 본인계약을 한 회원들의 자연장을 축하받을 일로 인식하는 분위기 역시 ‘모임’이 얼마나 본인계약을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자연장의 각 단계에 개입하는 이는 실제로 고인과 친했던 유족/지인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모임’은 대리 산골을 행하던 ‘일본우선’(日本郵船)을 다음과 같이 비판³⁶한다.

…그들의 방식은 일면식도 없는 선장에게 산골을 의뢰하는 것이다. 산골이 사무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유족의 입회 없이 정말 장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과장을 보태어 말하자면, 유골의 해양투기업이 될 우려가 있다. …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모임’이 구성해온 자연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체 처리에 있어서는 고인과 실제 친분이 있는 이가 고인과 관련이 있는 도구로 유골을 분말화하고, 유골은 전부 산골하여 무덤을 만들지 않는 것, 대자연이라 칭해지는 넓고 추상적인 공간에 산골할 것, 무덤과 같은 특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고별과 추도

36 『再生』 第42号, 2001. 9, 11쪽.

방법에서는 불교식 등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 자유롭게 죽은 이를 추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산골 후의 추도에 관해서는 유골과 무덤에만 영혼이 깃든다는 사후 관념을 거부하고, 산골한 장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 사회관계에서는 고인/유족이 ‘이에’제도와 ‘단가’제도와 같은 규범적 관계에 종속되지 않는 형태로, 자신의 의지로 자연장을 선택해서 계약할 것과, 자연장에 참가하는 사람은 대면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한정할 것을 언급한다.

즉, 자연장은 선조 대대로의 무덤 혹은 무덤과 같은 공간을 ‘만들지 않고’, 산골한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불교식 추도를 ‘하지 않고’, 선조 대대로의 무덤을 규정해온 사회관계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의미를 두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자연장은 선조 대대로의 무덤과 그를 둘러싼 의례를 주도면밀하게 배제한 결과, 그 의례 형태가 비가시화된 장례인 것이다. ‘모임’의 이념, 즉 국가, 이에, 단가 등의 ‘시스템’의 간섭에서 탈피해 삶의 방식을 자각적으로 추구하고 선택하는 개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그 대척점에 있는 선조 대대로의 무덤의 적극적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

4. 나가며: ‘시스템’을 넘어

장례문화의 변화가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것이라 여기는 논조는, 앞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뿐만 아니라 일본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다. 이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기존의 선조 대대로의 무덤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기에 무덤을 만들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나 장례가 인류의 세계관 혹은 삶의 방식이 동전의 양면처럼 투영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대의 장례문화의 변화를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만은 없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사회구조적 변화에 중점을 두는 시점에서 탈피하여, 정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현대 일본 장례

문화의 변화를 음미해보았다.

일본의 자연장은 근대 및 전후의 사회변화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기존의 선조 대대로의 무덤은 근대 일본 특유의 국가주의를 반영하며 형성되었고, 전후부터 1980년대까지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인 ‘모임’의 설립자들은 국가와 ‘이에’, ‘단가’ 등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자연장은 이러한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온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부분은 ‘모임’의 언설에 한정된다는 것을 밝혀둔다. 실제 회원들이 행하는 자연장과 ‘모임’이 구성한 자연장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현대 일본 장례문화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열쇠이므로 다음 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한편 자연장 이외의 합장묘, 수목장에 눈을 돌려보면, 자연장처럼 그 경향이 현저하지는 않지만 각자 ‘시스템’에 의해 규정된 장례에 대한 문제의식 위에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장묘의 선구자 격인 특정 비영리법인 ‘엔딩센터’는 ‘이에’ 제도를 넘어서는 유연한 인간관계와 상호부조 시스템의 창조를 모토로 내걸고 있으며, 수목장을 처음 제창한 이와테현(岩手県) 이치노세키시(一関市)의 지쇼인(知勝院)은 ‘단가’ 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포멀(informal)한 종교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새로운 장례 방식이 속속 등장하던 때로부터 근 30년이 지난 현재, 장례 문화는 다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 예상된다. 근대 일본 특유의 ‘시스템’에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전쟁 체험 세대 및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거의 다 사망하는 시점이 오면, 이미 하나의 선택지로 정착한 새로운 장례 문화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